



제 43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정태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296호)

2026. 2.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및 환헷지 파생상품 과세 특례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3

I. 개요

1. 정태호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6296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정태호의원 등 23인
- (2) 제 안 일 : 2026. 1. 23.
- (3) 회 부 일 : 2026. 1. 26.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외환시장의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외자산의 국내 환류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조세특례제한법」에 해외주식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와 환율위험변동회피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하면서, 동 특례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162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및 환헷지 파생상품 과세특례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현 행	개 정 안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 양도소득세 감면(\$4조)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 받은 소득세 감면세액의 20% ○ 대상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과세특례 ○ <추 가>	☐ 국내시장 복귀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91조의26) ○ 대상 (현행과 동일) ○ 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한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 환율변동위험회피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특례 ○ (시행일) 공포한 날 ○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소득세 감면부터 적용

☐ 개정안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및 환헷지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 소득 공제 과세 특례를 신설하려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6294호)¹⁾이 입법화되는 것을 전제로, 동 특례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하려는 것임.

☐ 현행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거주자가 보유한 해외주식을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환율위험변동회피상품 투자액의 5%를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

감면받은 소득세·법인세 등의 감면세액의 20%와 같은 법에 따라
 감면받은 이자소득·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세액의 10%를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로 하되²⁾, 같은 법 제4조에서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경우를 나열하고 있음³⁾.

2)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호별	과세표준	세율
1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받는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세액(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00분의 20
2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은 이자소득·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세액	100분의 10

3)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외국정부를 포함한다)·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감면
2. 농어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의 어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농어업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특별세액감면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1항·제3항에 따른 세액감면
- 3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 3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소득공제에 따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로부터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가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은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승인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주주등의 자산증여 및 법인의 채무상황이 이루어 질 것
 2. 재무구조개선계획에는 금전의 경우 법인이 해당 금전을 받은 날부터 2026년 12월 31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금전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2026년 12월 31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권자(이하 이 조 및 제44조에서 “금융채권자”라 한다)에 대한 부채의 상황에 전액 사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날의 다음 날에 부채의 상황에 전액 사용을 말한다)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 ③ 제1항에 따라 주주등이 법인에 자산을 증여할 때 소유하던 자산을 양도하고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그 양도대금을 해당 법인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거나 같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거주자: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방법
 2. 내국법인: 양도차익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방법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첫째,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및 환헷지 파생상품에 관한 해외주식 양도소득 과세 특례와 더불어 농어촌특별세를 함께 감면함으로써 외환시장 수급 불균형 해소 및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

RIA 및 환헷지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 특례가 신설되더라도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이 입법화되지 않는 경우, 투자자가 체감하는 실질 절세 효과는 반감될 것으로 보임. 따라서, 관련 법률인 「농어촌특별세법」을 병행 개정함으로써 외환시장 수급 불균형 해소 및 자본 환류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는 기존 조세특례에서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어 정책 연속성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로 보임. 예컨대 주주등의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4) 및

4)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로부터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가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은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승인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주주등의 자산증여 및 법인의 채무상황이 이루어 질 것
2. 재무구조개선계획에는 금전의 경우 법인이 해당 금전을 받은 날부터 2026년 12월 31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금전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2026년 12월 31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권자(이하 이 조 및 제44조에서 “금융채권자”라 한다)에 대한 부채의 상황에 전액 사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날의 다음 날에 부채의 상황에 전액 사용을 말한다)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③ 제1항에 따라 주주등이 법인에 자산을 증여할 때 소유하던 자산을 양도하고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그 양도대금을 해당 법인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거나 같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거주자: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방법
2. 내국법인: 양도차익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방법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 배당소득 대한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7⁵⁾) 등도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농어촌특별세를 함께 비과세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다만, 개정안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및 환헷지 파생상품 과세특례’ 도입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정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동 제도의 신설 여부에 따라 개정안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문 의 처

02)6788-5150

5)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7(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주식(이하 이 조에서 “해외상장주식”이라 한다)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17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가 직접 또는 집합투자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에 투자하여 취득하는 해외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을 포함한다)을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이하 이 조에서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해당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하여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것
 2. 거주자 1명당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원금이 3천만원(「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모든 금융회사등에 가입한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내일 것
- ②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해외상장주식 및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의 요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